협동조합
KOREA COOPERATIVES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협동조합

설립서식 가이드북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협동조합 KOREA COOPERATIVES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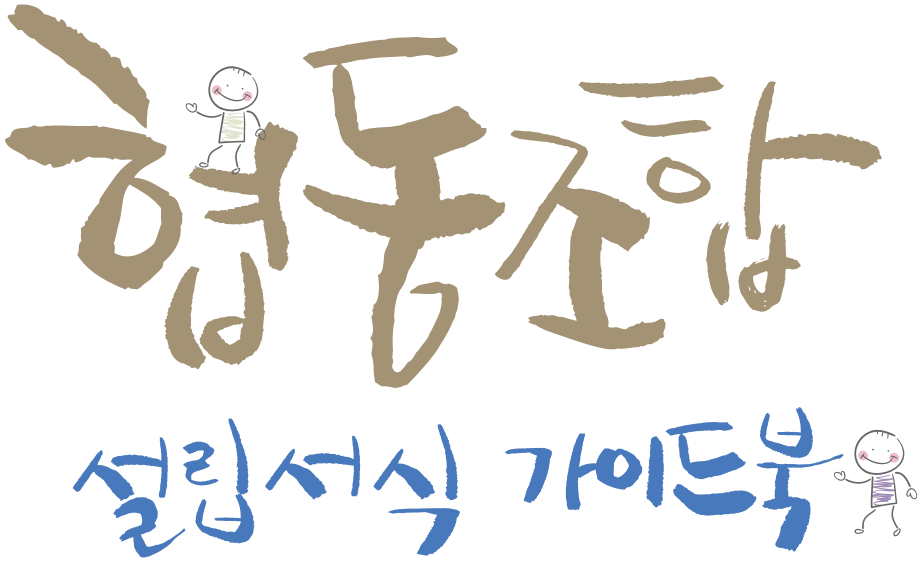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목 차

01. 협동조합 개요 06
1. 협동조합의 정의 06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06
3. 협동조합의 특징 07

02. 협동조합 설립 절차 10
1. 설립절차 10
2. 설립 신고 시 필요서류 10
3. 설립 이후 필요서류 11

03.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류 작성방법 14
1. 발기인 모집 14
2. 정관작성 14
1)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14
2) 정관작성 15
3. 설립동의자 모집 22
1) 설립동의자 모집 시 유의사항 22
2) 설립동의서 작성 22
3)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작성 22
4) 설립동의자 명부 작성 22
5) 출자자 명부 작성 22
4.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23
1) 창립총회 공고문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 23
2) 창립총회 개최 시 유의사항 24
3)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25
5. 설립신고 26
1) 설립신고 시 유의사항 26
2) 설립신고서 작성 27

3) 임원명부 및 이력서 작성 29
4) 사업계획서 작성 30
5) 수입 · 지출 예산서 작성 35

04. 협동조합 설립 이후 행정절차 40

1. 신고확인증 발급 40
2. 설립 사무의 인계 40
3. 출자금 납입 40
4. 설립등기 41
5. 사업자 등록 41

05. 부록 [서식으로 보는 서류 작성방법] 44

1.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44
2. 설립동의서 67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68
4, 설립동의자 명부 69
5. 출자자 명부 70
6. 창립총회 공고문 71
7. 창립총회 의사록 72
8. 임원명부 75
9. 임원 이력서 76
10. 사업계획서 77
11. 수입 • 지출 예산서 79
12. 설립신고서 80

【별첨】

1. 지자체 협동조합 담당부서 및 연락처 82
2. 협동조합 설립서식 자료실 87
3. 협동조합 설립서식 작성안내 동영상 88

01 협동조합 개요

1. 협동조합의 정의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3. 협동조합의 특징

01 협동조합 개요

1.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법 제2조제1호)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함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하므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3. 협동조합의 특징

구 분	협동조합 주요 특징
법인격	영리 법인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 · 도시사에게 신고
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조합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의결권 · 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조합원에 대한 교육 · 협동조합 간 협력 ·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사업의 이용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비조합원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감독	관련 규정 없음. 벌칙 및 과태료 부과

02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설립절차
2. 설립 신고 시 필요서류
3. 설립 이후 필요서류

02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설립 절차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공고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창립총회 개최 7일전 까지 공고	

창립총회 개최	→	설립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설립사무의 인계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발기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 도시사에 신고		신고 후 20일 이내, 시 · 도시사가 발기인에게 발급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인계	

출자금 납입	→	설립 등기	→	사업자 등록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소

2. 설립 신고시 필요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 명부(임원 이력서와 사진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 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 · 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설립 이후 필요 서류

1) 설립 등기 시 필요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신고확인증	법 제61조 설립신고서 대신 확인증 제출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 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 • 초본 제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필요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제출

03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류 작성방법

1. 발기인 모집
2. 정관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5. 설립신고

03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류 작성방법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써,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
-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 개최 공고

2. 정관 작성

1)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포함하여야 하나,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 16조(정관)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정관작성

설립과 명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인지 검토 필요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
-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
- '00농업협동조합', '00수산업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 '00산림조합', '00중소기업협동조합', '00신용협동조합',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기존 **8개 개별법상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 사용 금지**

목적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조합의 유형에 맞는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조합원의 자격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함

■ **미성년자**는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필요

【참고】 협동조합 유형별 조합원의 자격 예시

※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사업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출자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출자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함
  - 출자 1좌 금액의 법적 최저한도 또는 최고 한도는 없음

지분의 범위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지분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금액으로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분의 범위는 정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법정 적립금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정적립금의 **최저비율은 잉여금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임의 적립금

제27조(임의 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임의적립금의 비율은 조합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규정 가능하며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일정한 규모의 적립 필요

대의원 총회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음

■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음

총회의 의결사항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 의결 사항 추가로 규정 가능**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으나,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규정가능

– 협동조합기본법 제 29조의 내용은 표준정관례 제 34조(총회의 의결사항) 참조

임원의 선임

조합에서 선출한 이사의 총수 ↴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조합에서 선출한 감사의 총수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선출
- 이사의 정수 및 이사 • 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합원 외의 자의 임원 선출을 규정할 필요는 없음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공공기관 상임임원 및 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사업의 종류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 요건 · 절차 ·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관계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지 않아야 함

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 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 발기인 전원이(5인 이상) 정관에 기명 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음) 또는 서명 하여야 함

3. 설립 동의자 모집

1) 설립동의자 모집 시 유의사항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자**
  – 발기인을 포함한 개념
-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서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하고, 발기인은 이를 바탕으로 설립동의자 명부 및 출자자 명부 작성**

2) 설립동의서 작성

- **설립에 동의하는 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출자좌수 등을 설립동의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함**

3)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작성

- **발기인은 설립동의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및 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득해야 함**

4) 설립 동의자 명부 작성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조합원

연번	발기인/ 설립동의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해관계자
1					
2					

-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

5) 출자자 명부 작성

○○○ 협동조합 출자자 명부

※ 1좌당 금액 : 00000원　　(단위: 좌, 원, %)

연번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출자좌수	출자금액	비율
1					
2					

- **연번,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출자좌수, 출자금액과 해당 출자자의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4.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1) 창립총회 공고문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

○○○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4. 의결 사항
   가. 정관 확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다. 임원 선출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20 . . .

(가칭) ○○○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 ○ ○ (인)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기간 7일 중 첫째날은 공고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만료
  ↳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공고기간의 첫째날은 공고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소 5월 7일 전에 공고
- 다만,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창립총회 필수 의결사항은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며, 이외 기관의 상황에 따라 의결 사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2) 창립총회 개최 시 유의사항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소유, 조합원의 의결권 ·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2항)

대리인의 선임

■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대리인을 특정하여 지정하며,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의 의결권 및 선거권 무효**
-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을 협동조합에 제출

■ 대리인의 범위는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함

임원의 선임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최소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와 감사는 수가 정관에 규정한 수와 부합하여야 함

- 임원 선출 시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함
-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이력서 제출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함

- 다만, 법인세법 109조에서 법인 설립 시 세무서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시스템 상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향후 법인 운영 상 용이

■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고,

■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의사 및 능력이 필요**

3)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필수의결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자 3인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다만, 선출된 임원이 모두 설립동의자인 경우로 한함)

–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5. 설립신고

1) 설립신고 시 유의 사항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시 · 도지사)에게 신고

– 조례로 시 · 도지사가 시 · 군 · 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가 위임된 경우 시 · 군 · 구청장에게 설립신고(82쪽, 별첨 1참고)

설립신고서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2.〉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 · 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 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2) 설립신고서 작성

설립신고인 및 신고내용

설립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 **설립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설립동의자 수, 출자금 납입총액, 창립총회 개최일을 기재
- **설립동의자 수**는 설립동의자 명부의 인원 수, **출자금 납입총액**은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의 출자금 총액을 기재하고, **창립총회 개최일**은 창립총회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의 창립총회 개최일을 기재

법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 조합명과 연락처, 주 사무소 소재지(도로명 주소기재), 이사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사장 주소, 연락처를 기재
- 임원이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제1항에 규정한 임원 등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이사장의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기재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014.1.21〉

3) 임원명부 및 이력서 작성

임 원 명 부

연 번	직위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법인 주소)	연락처

창립총회를 통해 선출한 임원의 명부와 이력서를 작성

-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직위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연락처를 기재
- 자연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기재
  -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
-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법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함께 기재

4) 사업계획서 작성

발기인이 작성한 후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사업계획서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2.〉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협동조합설립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계획	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작성방법

해당 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요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 **조합명**은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의 명칭을 기재하되, 반드시 **정관의 조합명칭**(표준정관례 제1조 참고)과 일치하여야 함

■ **업종**은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대분류(A~S)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참고】 산업코드와 산업내용

산업 코드	산업내용	산업 코드	산업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K	금융 및 보험업
B	광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F	건설업	P	교육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주소**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기재

■ **출자금**은 **인가 신청 당시 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설립인가신청서의 출자금 총액,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과 일치하여야 함

■ **업태, 사업자등록번호**는 전환인 경우에만 작성하고, **설립연월일, 인가번호, 연합회 가입현황**은 작성하지 않음

■ **조직연혁**은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의 주요 활동 연혁 기재

■ **설립목적**은 정관의 목적(표준정관례 제2조)을 기재하되,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이 드러나도록 기재

기관 및 임원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사결정 기구**인 '**조합원총회**', '**이사회**'에는 **반드시 [√] 표시**(중복표시 가능)

– '대의원총회'의 경우에는 실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만 [√] 표시

■ **조직도**는 협동조합의 조직도 기재

■ **임원현황**은 창립총회에서 신출된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직위, 성명, 주요 경력, 직원 겸직여부를 기재

조합원 현황 및 직원고용 계획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계획						명

■ **조합원 현황은** 설립 동의자를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로 구분하여 기재

– 설립인가신청서의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구성원 총수, 설립동의자명부 상 설립동의자 수, 출자자명부 상 출자자 수가 모두 일치하여야 함

■ **직원고용계획은**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협동조합에서 고용하려는 유급직원의 수를 기재하며, 조합원 현황의 직원과 직원고용계획의 직원을 혼동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해당연도 사업계획

해당 연도 사업계획	

■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배경, 목적, 세부사업계획** 및 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산출근거** 기재

– 다만,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로서 예산과 산출근거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만 기재

5) 수입 · 지출예산서 작성

수입 · 지출예산서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7.22.〉

협동조합등 수입 · 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기이월금			경상비	인건비	
사업수입	00사업			운영비	
	〃			소계	
	〃		사업비	00사업	
	소계			〃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	
	지원금			소계	
	기타		사업외지출	기부출연금	
	소계			지원금	
출자금				기타	
차입금				소계	
기타수입			출자금반환		
〃			차입금상환		
〃			배당금		
〃			기타지출		
〃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조직 개요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 사업계획서에 작성 방법(32쪽, 조직개요) 참고

수입

수입 (단위: 원)		
구분		금액
전기이월금		
사업수입	00사업	
	〃	
	소계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지원금	
	기타	
	소계	
출자금		
차입금		
기타수입		
합계		

- 정관 제61조(표준정관례 기준) “사업의 종류” 중 사업을 통한 수입(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수입란에 기재
- 사업을 통한 수입 이외의 수입 항목 및 금액을 사업외 수입란에 기재
- 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 예상 출자금 총액을 기재
-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금융기관 등(개인 포함)으로부터 차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금 총액을 기재

지출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경상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사업비	00사업	
	〃	
	소계	
사업외지출	기부출연금	
	지원금	
	기타	
	소계	
출자금반환		
차입금상환		
배당금		
기타지출		
차기이월금		
합계		

■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상비에 기재

–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조직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일용인건비, 퇴직급여, 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포함 (세전급여이며,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도 포함)

■ 정관 제61조(표준정관례 기준) "사업의 종류" 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비에 기재

■ 사업 외 지출란에는 사업비 및 경상비 이외에 부수적 활동에서 발행하는 비용을 기재

【참고】 사업비

■ (수입) 사업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의 예상 매출액

■ (지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 예상 금액 적시

– 사업수행을 위한 실제 발생 비용으로, **생산원가 개념** 해당

※ 주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투입은 사업을 위한 직접 투입인력과 간접 투입인력을 구분하여 직접 투입인력은 사업비로 편성 가능

– 사업비는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생산원가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비용을 포괄함

– 정관상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 확립과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생산원가를 정리하여,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생산원가를 합(合)하여 기재함

04 협동조합 설립 이후 행정절차

1. 신고확인증 발급
2. 설립 사무의 연계
3. 출자금 납입
4. 설립등기
5. 사업자 등록

04 협동조합 설립 이후 행정절차

1. 신고확인증 발급

■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시행규칙 제8호 서식)' 발급

- 시 · 군 · 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가 위임된 경우 시 · 군 · 구청장 명의로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시행령 제8조제1항)

■ 보완요구

- 설립신고 기재사항의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반려가능 사항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2.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3.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 시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 제출(설립신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

법인등기 전	→	법인등기	→	법인명의 통장개설
이사장 명의의 통장에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 통장의 출자금 납입총액 확인		법인명의 통장개설 및 출자금 이체

4. 설립 등기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하며, 협동조합은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출자금의 납입"이란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
-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제1호)

5.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 **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제출

05 부록 [서식으로 보는 서류 작성방법]

1.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2. 설립동의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설립동의자 명부
5. 출자자 명부
6. 창립총회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8. 임원명부
9. 임원 이력서
10. 사업계획서
11. 수입 • 지출 예산서
12. 설립신고서

05 부록 [서식으로 보는 서류 작성방법]

1. 표준정관례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 표준정관례는 정관 작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기존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여부 및 혼동여부 검토 (시행령 제2조제2항) 협동조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제 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 기관고유의 설립목적을 기재

제 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 · 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 사업분야와 내용, 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님)

제 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기관 소재지의 행정구역에 맞게 선택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의 첫째날은 공고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만료

제 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 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조합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약,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규약은 총회,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임

제 2장 조합원

제 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하며 외국인 및 외국법인으로 가능함. 단,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아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 한정함

※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

제 1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사업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다른 업종의 조합원 비율은 조합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 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 직원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2/3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

제 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제 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제 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 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조합원에게 출자금 이외에 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제 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조합의 사업 및 목적을 고려하여 그 밖에 탈퇴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음

제 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 · 행정처분 ·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음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①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은 제 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 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탈퇴 · 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분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금액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탈퇴 · 제명조합원에 대한 지분 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협동조합으로 부터의 차입금, 선급금, 외상판매대금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의미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 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 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 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하며, 출자 1좌 금액의 법적 최저한도 또는 최고 한도는 없음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 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

제 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위의 양도란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의결권 및 선거권, 사업의 이용, 배당 등)와 의무(선거운동의 제한, 겸직금지 등)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

└, 지분의 양도란 탈퇴 조합원이 갖고 있는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지분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받아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보유하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을 현금화 하여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 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출자감소의 절차】

총회의 의결	→	대차대조표 작성	→	이의신청 공고
총회에서 출자 1좌의 금액 감소를 위한 정관 변경		총회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		채권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제 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 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② 제 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 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 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제 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으로 협동조합이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임의적립금이란 협동조합의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을 위한 임의적 성격의 적립금으로, 총회의결에 따라 적립비율 및 용도 등을 정함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 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대의원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함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음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 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 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
   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 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합은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제 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 36조(합병 ·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 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 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 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 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 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조합원 수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이는 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원이 거의 같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총회와 이사회의 실질적 권한이 중복되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불필요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있으므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 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5장 임원과 직원

제 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 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함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사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함

제 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 물품 ·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 물품 ·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 팩스 ·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 · 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 · 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함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최초로 개시되는 임기를 제외하고 추가로 2차까지 연임가능(최장 12년까지 연임 가능)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 감사 등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겸직 가능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한다.

└, 3분의 20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며 이때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의 조합원 및 직원 현황을 기준으로 함

제 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 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 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 · 정관 · 규약 ·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 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 2항 및 제 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 2항 및 제 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 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 2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 57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9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 · 규약 · 규정과 총회 ·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받은 협동조합 제외

└, 주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하나,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go.kr)에 공시

1. 정관, 규약, 규정
2. 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 6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 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 요건 · 절차 ·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 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 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제 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ㄴ,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9가지로 한정됨, 다만 임의로 추가 불가하며, 조합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 · 명시하여야 함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제 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직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

   ㄴ,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이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말함

제 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 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 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 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 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보고서 승인 과정】

감사에게 제출	→	총회에 제출	→	총회 의결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		협동조합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 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 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 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 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④ 조합은 제 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 26조 및 제 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 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 배당세율은 배당소득의 14%임

제 8장 합병 · 분할 및 해산

제 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권리능력 상실

└,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1. 총회의 의결
2.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 필요한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함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해산 절차】

청산인 취임		재산처분 총회의결		해산신고 및 등기
이사장이 청산인 청산인 등기	→	재산처분방법 관련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청산인 취임 14일 이내 신고 후 등기
청산사무의 종결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청산종결 등기**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음	→	청산사무 종결 후 14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제 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항 및 제 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청산이란 파산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제 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시 · 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 5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요

2. 설립 동의서

설립동의서

본인은 ○○○ 협동조합(가칭)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설립에 참여하고자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이해관계자(택 1): 생산자/소비자/직원/후원자/자원봉사자

출자좌수: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OOO 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 대표 귀하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회」에서 추진하는 ○○○협동조합(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조합원 탈퇴시 파기함, 단 출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 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유로 필요시 아래의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신고 관련 : 기획재정부, 주사무소 관할 시 · 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나. 정보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OOO 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 대표 귀하

4. 설립동의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7.22.〉

[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 ] 조합원

명부

연번	발기인/ 설립동의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해관계자
1	└, 설립허가 신청서의 설립 동의자 수, 사업계획서의 조합원 현황과 인원수가 동일해야 함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재		
2					
3					
4					
5					

작성방법
1. 이해관계자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연합회 설립 시 회원인 협동조합의 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5. 출자자 명부

○○○ 협동조합 출자자 명부

정관의 출자(표준정관례 18조)에서 규정한 금액기입

※ 1좌당 금액 : 00000원 (단위: 좌, 원, %)

연번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출자좌수	출자금액	비율
1					
2					
3					
4					
합 계					100.0

현물출자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정관에 객관적인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방식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시가 등)기재가능

설립신고서 출자금납입총액,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조직개요의 출자금과 금액이 같아야 함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30/100을 초과해서는 안 됨
(연합회의 경우 한 회원의 출자좌수가 40/100을 초과해서는 안 됨)

6. 창립총회 공고문

○○○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4. 의결 사항

가. 정관 확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다. 임원 선출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일시, 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의결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의결사항 중 정관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임원선출, 설립경비 등은 필수 의결 사항이므로 공지 필요

20 . . .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함

(가칭) OOO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OOO(인)

7. 창립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 . . (○요일)

2. 총회일시 및 장소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야함

가. 일시 : 20 . . (○요일) ○○시

나.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참석자 → 설립동의자 명부에 재적설립동의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함

가. **재적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ㅁㅁㅁ, … ▽▽▽(재적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나. **참석 설립동의자**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참석 설립동의자 이름 나열)

4. 총회 안건

↳ 필수의결사항을 모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의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건추가 가능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제3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 · 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5. 총회 내용

가. 임시의장 선출

발기인대표 ○○○**가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 임시의장 선출

나.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전체 설립동의자 ○○명 중 ○○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기와 기명날인인 지명

-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한 **서기로 ○○○ 조합원을, 기명날인인으로** ○○○, △△△, … ▽▽▽**를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하다.

↳ 3명 이상의 기명날인인 선출

↳ 기명날인인을 별도로 지명하지 않고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도 무방

라.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라.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정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정관의 목적, 조합의 책무, 조합원의 자격 등 각 조항에 대해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관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묻다.
- △△△ 조합원이 정관 제○조에서 '○○○○'를 '△△△△'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다.
- ㅁㅁㅁ 조합원이 제○○조 제○항의 문구에 '▽▽▽▽▽▽'를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의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와 재청을 묻다.
- ◇◇◇ 조합원의 재청, 전원 동의로 수정인이 성립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제○○조 제○항를 제안과 같이 수정하여 **정관을 확정하는에 대한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수정안을 수정하고 정관을 확정하다.
  -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바.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후보추천 예시①) 의장이 임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사로 ○○○, △△△, … ▽▽▽, 감사로 ◇◇◇가 추천되다.
  - ↳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선출
    – 법인인 조합원도 임원 가능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임원 가능

〈이사후보〉

- ○○○(발기인 대표)
- △△△(발기인, ○○○○ 대표)

…

〈감사후보〉

- ○○○(발기인)
- 임원후보 전원이 인사말을 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을 거수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선출방법을 확정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에 대한 찬성하는 조합원은 거수할 것을 주문하여 전원이 동의하여 후보 전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다.
- 의장이 선출된 임원 전원에 대해 수락여부를 묻고 선출된 임원 전원이 수락하다.

- 의장이 **이사로 선출된 자 가운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다.
  ↳ 이사장은 반드시 이사 중 선출
- ▽▽▽ 이사가 다른 후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주문하여 전원 동의로 선출하다.

사. 제3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 · 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 · 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줄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 · 지출예산(안)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다.
- 의장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 · 지출예산(안)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아.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 의장이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된 내역 및 설립 시까지 소요 될 예상 경비를 보고 하고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차후 설립인가 후 출자
  금 납입이 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다.
- 조합원 ○○○이 동의하고 조합원 △△△의 재청 및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자.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 협동조합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 . . .

(가칭)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이사장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이사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며, 임시 의장을 뽑아 총회를 개최한 후 이사장이 선출되어 정식의장으로 추대될 경우 임시의장과 이사장 모두 기명날인

8. 임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7.22.〉

임 원 명 부

연번	직위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법인 주소)	연락처
	ㄴ 이사장 이사, 감사기재	ㄴ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표 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성명과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기재		ㄴ **자연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록기준지,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등록 기준지와 법인주소를 기재	

작성방법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동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9. 협동조합 임원 이력서

<table>
<tr><td rowspan="4">사진
(3x4)</td><td colspan="5">협동조합 임원 이력서</td></tr>
<tr><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 ○ ○
○ ○ ○</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자택전화</td><td></td><td rowspan="2">이메일</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휴대전화</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5">(도로명 주소로 작성)</td></tr>
<tr><td>등록기준지</td><td colspan="5">(도로명 주소로 작성)</td></tr>
<tr><td>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td><td colspan="2"></td><td colspan="3">※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td></tr>
<tr><td>년</td><td>월</td><td>일</td><td colspan="2">학력 / 경력 / 자격 사항</td><td>비 고</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6">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작성자 : ○ ○ ○ (인)</td></tr>
</table>

10.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2.〉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table>
<tr><td rowspan="7">조직 개요</td><td colspan="2">조합명(연합회명) 정관의 명칭사용</td><td>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td></tr>
<tr><td colspan="2">설립 연월일 기재 불필요</td><td>업태 기재 불필요</td></tr>
<tr><td colspan="2">신고번호 기재 불필요</td><td>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불필요</td></tr>
<tr><td colspan="3">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기재 불필요</td></tr>
<tr><td rowspan="3">주소</td><td colspan="2">주사무소 도로명 주소 기재</td></tr>
<tr><td colspan="2">제1 지사무소</td></tr>
<tr><td colspan="2">제2 지사무소</td></tr>
<tr><td colspan="2">출자금 백만원</td><td>인가신청 당시 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재, 설립인가 신청서의 출자금 총액,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과 일치해야함</td></tr>
</table>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협동조합설립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계획	명

작성방법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예시〉 1. 사업배경 2. 목적 3. 세부사업계획 1) 2) 4. 세부 사업별 수입 및 지출

작성방법

해당 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 수입 · 지출 예산서 (제출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7.22.〉

협동조합등 수입 · 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정관의 명칭사용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기재 불필요		업태 기재 불필요
	신고번호 기재 불필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불필요
	주소	주사무소 도로명 주소 기재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인가신청 당시 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재, 설립인가 신청서의 출자금 총액,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과 일치해야함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기이월금			경상비	인건비	
사업수입	00사업			운영비	
	〃			소계	
	〃		사업비	00사업	
	소계			〃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	
	지원금			소계	
	기타		사업외지출	기부출연금	
	소계			지원금	
출자금				기타	
차입금				소계	
기타수입			출자금반환		
〃			차입금상환		
〃			배당금		
〃			기타지출		
〃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12.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2.〉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설립동의자 명부 상 인원수 기재		출자자 명부의 출자금 총액 기재	창립총회 의사록 상 개최일 기재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정관의 명칭사용			전화번호	
	소재지 도로명 주소 기재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 · 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 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

1. 지자체 협동조합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협동조합 설립서식 자료실
3. 협동조합 설립서식 작성안내 동영상

별첨 1 지자체 협동조합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시 · 도 협동조합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연번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1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02-2133-5485
		(경영공시 담당)	02-2133-5486
2	부산시	기업지원과	051-888-2331
		협동조합지원센터	051-888-2335
3	대구시	사회적경제과	053-803-6471
4	인천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2
5	광주시	일자리투자정책국 일자리정책관	062-613-3603,3604
6	대전시	일자리추진기획단	042-270-3582
7	울산시	경제일자리과	052-229-2792
8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지원팀	031-8030-2972
9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033-249-2752
10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043-220-3244
11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041-635-2151
12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정책관실	063-280-3216
13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061-286-2953
14	경상북도	일자리창출단	053-950-3964
15	경상남도	기업지원단	055-211-2954
16	제주도	경제정책과	064-710-2552
17	세종시	지역경제과	044-300-4032

※ 위 연락처는 2014년 11월 기준 자료 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 서울시 자치구별 협동조합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연번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1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3
2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02-3425-6112
3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6382
4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327
5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02-879-5762
6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054
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8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02-2627-2022
9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10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02-2091-3172
11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76
12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02-820-9591
13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656
14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02-330-1913 02-330-8671
15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8739
16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92
17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02-920-2313 02-920-2309
18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02-2147-3100
19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02-2620-4815
20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4105
21	용산구	고용정책과	02-2199-7195
22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02-351-6878
23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74
24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693
25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02-2094-2924

※ 위 연락처는 2014년 11월 기준 자료 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 경기도 자치시별 협동조합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연번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1	가평시	경제과	031-580-2273
2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031-8075-3681
3	과천시	산업경제과	02-3677-2271
4	광명시	사회적기업팀	02-2680-2269
5	광주시	기업지원과 경제유통팀	031-760-4733
6	구리시	산업경제과	031-550-2599
7	군포시	지역경제과	031-390-0355
8	김포시	경제진흥과	031-980-2292
9	남양주시	협동조합팀	031-590-4201
10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031-860-2271
11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697
12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031-729-3664
13	수원시	일자리창출과 협동조합팀	031-228-2354
14	시흥시	주민자치과	031-310-6053
15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031-481-3306
16	안성시	창조경제과	031-678-5452
17	안양시	지역경제과	031-8045-5553
18	양주시	지역경제과	031-8082-6052
19	양평시	지역경제과	031-770-2283
20	여주시	지역경제과	031-887-2274
21	연천시	지역경제과	031-839-2838
22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85
2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031-324-3859
24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51
25	의정부시	기업유치팀	031-828-2248

※ 위 연락처는 2014년 11월 기준 자료 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26	이천시	기업지원과	031-644-2274
27	파주시	기업지원과	031-940-4524
28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031-8024-3514
29	포천시	지역경제과	031-538-2287
30	하남시	기업지원과	031-790-5598
31	화성시	경제정책과	031-369-6478

※ 위 연락처는 2014년 11월 기준 자료 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 충청북도 시 · 군별 협동조합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연번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1	괴산군	경제과	043-830-3292
2	단양군	지역경제과	043-420-2402
3	보은군	경제정책실	043-540-3234
4	영동군	경제과	043-740-3711
5	옥천군	경제과	043-730-3364
6	음성군	경제과	043-871-3443
7	제천시	생활경제과	043-641-6623
8	증평군	경제과	043-835-4012
9	진천군	경제과	043-537-3334
10	청주시	경제과	043-201-1362

※ 위 연락처는 2014년 11월 기준 자료 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 경상북도 시 · 군별 협동조합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연번	지자체	부서명	전화번호
1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13
2	경주시	경제진흥과	054-779-6240
3	고령시	경제교통과	054-950-6232
4	구미시	노동복지과	054-480-6243
5	군위군	경제자원과	054-380-6337
6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73
7	문경시	경제진흥과	054-550-6235
8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74
9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8
10	성주군	경제교통과	054-930-6712
11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6233
12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4
13	영양군	기획감사실	054-680-6163
14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054-639-6143
15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054-330-6235
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097
17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7
18	울진군	경제과	054-789-6471
19	의성군	경제지원과	054-830-6561
20	청도군	산업산림과	054-370-2235
21	청송군	새마을경제과	054-870-6231
22	칠곡군	전략기획과	054-979-6092
23	포항시	경제노동과	054-270-2413

※ 위 연락처는 2014년 11월 기준 자료 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별첨2 협동조합 서식 자료실

□ 협동조합 홈페이지 검색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협동조합'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coop.go.kr 입력

□ 협동조합 사이트 '알림마당' 클릭

□ 협동조합 사이트 '서식자료' 에서 자료 검색

별첨 3 협동조합 서식 작성 안내 동영상

□ 협동조합 홈페이지 검색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협동조합'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coop.go.kr 입력

□ 협동조합 사이트 '교육'에서 수강가능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www.coop.go.kr